

Kant에 있어서 判斷力의 概念*

李 萬 成*

目 次

- I. 머 리 말
- II. 『순수이성비판』에 있어서의 선험적 판단력
- III. 『실천이성비판』에 있어서의 실천적 판단력
- IV. 『판단력비판』에 있어서의 반성적 판단력
- V. 맺 는 말

I . 머 리 말

칸트철학은 그것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철학사에 있어서 흔히 칸트철학이 큰 저수지에 비유될 만큼 그를 전후한 여러 철학자들이 그가 제시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현대에 있어서도 칸트철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해석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¹⁾

필자는 우선 형이상학으로서의 칸트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입장에서 본 논

*이 論文은 1985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한 補助를 받은 研究論文 임.

* 師範大學 國民倫理敎育科 專任講師

1) 칸트철학의 해석에 대한 두가지 가장 현저한 차이점은 그것을 새로운 인식이론의 정초로 보느냐, 아니면 전통적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형이상학의 정립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

문의 연구방향을 주로 「판단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일에 한정시켰다. 그 이유는 칸트철학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필자의 관심 때문이다. 즉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칸트의 비판철학 전반에 대한 학문적 의의를 지금까지는 주로 인식론적 측면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나 극히 현대에 와서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더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 바,²⁾ 과연 판단력의 문제에 대한 분석·검토가 이러한 해석경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까? 둘째, 칸트의 세 비판서에 나타나고 있는 판단력의 개념을 하나 하나 검토하여 봄으로써 바로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초로 하여 칸트의 비판철학 체계가 구축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본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형이상학으로서의 칸트철학 체계를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셋째, 지금까지 국내외의 여러 칸트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이 주로 제 1, 제 2, 제 3비판서 사이에 연계가 없이 두절된 체계로 해석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바, 판단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세 비판서간의 상호관계를 더 뚜렷하게 부각시켜 봄으로써 세 비판서에 대한 새로운 연계가능성을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넷째, 제 3비판서 즉 『판단력비판』이 흔히 제 1비판서와 제 2비판서와의 종합 및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경향을 인정하더라도 특히 『판단력비판』의 제 2부 <목적론적 판단력비판>에 대한 적극적 연구³⁾를 위해서는 세 비판서에 갈려있는 판단력의 개념에 대한 분석·검토가 필수 불가결한 일이 아닐까? 라고 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위에서 제시한 필자의 네가지 기본적인 관심영역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판단력의 개념을 칸트의 세 비판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형이상학으로서의 칸트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방향을 모색코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칸트의 세 비판서를 통관하고 있는 판단력 자체에 대한 연구업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이유를 암시

2) 신칸트학파의 인식론적 해석과는 달리 H. Heimsöeth, M. Heidegger, G. Martin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3) 장차 칸트의 목적론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써의 판단력개념에 대한 연구가 본 논문의 중심과제이다.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첫째로는 칸트의 비판철학의 체계안에 있어서는 판단력의 개념과 같은 문제는 극히 지엽적인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연구는 별로 학문적 의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칸트의 철학체계를 판단력이라고 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해명해 보는 일은 칸트철학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 두가지 이유보다는 다음과 같은 칸트철학에 입문하는 연구의 절차나 순서상의 문제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칸트의 비판철학의 체계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세 비판서에만 국한하더라도 연구가가 제 1비판서로부터 출발하여 제 3비판서에 이르기 까지에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됨으로 제 3비판서에 등장하는 판단력의 개념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다른 분야의 철학적 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연구에 대한 연속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칸트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제 1비판서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전혀 거꾸로 제 3비판서로 부터 출발해서 칸트철학에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필자는 먼저 제 1, 제 2, 제 3비판서에 등장하는 판단력의 개념분석을 토대로 하여 칸트의 비판철학전반에 대한 이해의 방향을 잡은 후, 특히 제 3비판서의 「반성적 판단력」을 중심으로 하여 전비판철학에 대한 새로운 형이상학적 이해의 방향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위한 연구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위한 그 일차적 작업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칸트의 세 비판서에 있어서의 판단력의 개념은 그 기능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곧 칸트철학에 있어서의 ‘알키메데스적인 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4)

4) 본 논문의 연구영역은 칸트의 대표적인 세비판서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력의 문제에만 국한시켰고, 연구방법은 칸트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선형적”(transzendental)인 방법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II. 「순수이성비판」에 있어서의 선험적 판단력 (die transzendente Urteilskraft)⁵⁾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칸트는 순수 오성개념, 즉 범주를 발견하기 위한 그 실마리를 판단작용에서 포착했다.⁶⁾

칸트에 의하면 “모든 판단들은 우리의 표상들간의 통일기능”⁷⁾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직접적 표상대신에 이런 표상과 그 이외의 여러 표상을 포괄하는 하나의 보다 더 높은 표상 [개념]”⁸⁾이, 대상을 인식하고자 사용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능한 인식이 하나의 인식 [類概念] 에로 집약”⁹⁾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들면, 「모든 물체는 可分的이다」라고 하는 판단의 경우에 있어서 이 可分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외의 다른 개념들에도 관계를 갖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특히 ‘물체’라고 하는 개념에 상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직관(Anschauung)들에 적용되어 있다.¹⁰⁾ 말을 바꾸면, 물체에 관한 우리의 직관들은 이 可分성의 개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각각의 물체를 개별적으로 직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물체들에 대한 여러 직관들을 가분성의 개념에 결합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판단」은 可分性(높은 表象)이라고 하는 공통징표를 가지고

5) 칸트의 직접적인 표현을 따르면 ‘transzendente Doktrin der Urteilskraft’ (선험적 판단력의 이설) 혹은 ‘transzendente Urteilskraft überhaupt’ (선험적 판단력 일반)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다음의 III항에 나오는 ‘실천적 판단력’과 대조를 보이기 위해 필자가 편의상 ‘선험적 판단력’이라고 한 것임.

6) 칸트에 있어서 「판단」에 관한 분석은 지각판단, 경험판단, 분석판단과 종합판단, 실천적 종합판단등에 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판단력」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취지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단지 칸트가 범주표 발견의 근거를 찾은 판단의 기능면에만 국한시켰다.

7)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philos. Biblio., Bd 37a, Felix Meiner, Hamburg 1956. B 94 (이하에서는 K.d.r.V.로 표기함).

8) 이하에서 []의 내용은 K.d.r.V.의 역자(최재희)의 삽입부분임.

9) K.d.r.V., B 94.

10) Vgl. *ibid.*, B 93.

여러 물체들(낮은 표상)을 통일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와같이 판단과 개념의 기능적 동일성을 간파한 칸트는 “오성의 모든 작용은 판단으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오성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¹²⁾는 것이다.

개념을 통한 사유의 능력이 곧 오성이라고 본 칸트의 입장에 동의하는 Paton 역시, 오성은 개념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 전혀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개념은 판단을 선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抽象”¹³⁾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개념들은 판단에 의거해야 한다.”¹⁴⁾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오성의 작용과 판단의 작용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곧 판단형식으로 부터 순수오성개념 즉 범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래서 칸트는 판단표만 완전히 주어질 수 있다면 역시 완전한 완전한 범주표의 목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여, 범주의 수효는 “모든 가능적 판단의 형식이 발견되었던 그 수효만큼 발생한다”¹⁵⁾고 했다.

물론 칸트가 판단표로 부터 도출한 범주표는 종래의 일반논리학의 판단분류표에 근거한 것이며, 이와 같은 칸트의 「판단」에 대한 추론은 장차, 『순수이성비판』의 〈선형적 논리학〉을 논구하기 위한 예비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선형적 논리학〉에서 논의되는 判斷力은 어떠한 개념인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특히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 있어서의 판단력을 선형적 판단력(die transzendente Urteilskraft)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우리가 『순수이성비판』을 인식론 혹은 형이상학, 그 어느 쪽으로 해석하던지 간에 그것의 기본문제는 「어떻게 선천적 종합판단은 가능한가?」라고 하는 물음속에 집약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서론〉 부분에서 이미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명제들은 「선천적 종합판단」이므로 이들 학문은 學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

11) H. J. Paton, *Kant's Metaphysics of Experience*,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36. Vol. 1. PP 254-255.

12) K.d.r.V., B 94

13) H.J. Paton, op cit., P 251.

14) Ibid.

15) K.d.r.V., B 105.

춘 것이라는 사실을 해명하고¹⁶⁾ 이어서 나머지 문제 즉 「어떻게」(Wie)라고 하는 문제의 해명은 대체로 〈선험적 변증론〉을 제외한 본문의 서술 내용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이성비판』의 중심과제는 「선천적 종합 판단」으로 정초되어 있는 수학과 자연과학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학문이라면, 이들이 그러한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분석해명코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순수오성개념의 연역〉(Deduktion der reinen Verstandesbegriffe)에 관한 작업이었다.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이 작업의 내용은 “선천적 개념이 어떻게 하여 대상과 관계할 수 있는가의 방식에 대한 설명”¹⁷⁾이라고 압축된다. 물론 이것은 감성과 오성이 전혀 별개의 인식능력이라고 하는 二元의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는 칸트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순수오성개념의 도식론〉(Schematismus der reinen Verstandesbegriffe)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순수오성개념이 현상일반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순수오성개념속에 직관이 포섭되는 근거가 필히 해명되어야 하리라는 칸트의 끈질긴 집념이 엿보인다. 요컨대, “순수오성개념은 경험적 직관과 비교해 보면 전혀 異種的인 것이며 결코 어떤 직관속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¹⁸⁾이므로 개념과 직관의 결합근거에 대한 해명은 실로 『순수이성비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같은 문제를 章을 달리하여 반복해서 논의하는 데 대한 칸트의 본의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 같으나, 〈선험적 연역〉의 경우가 정적이며 논증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도식론〉은 동적이며 과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점에서 어느정도 그 차이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성과 판단력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칸트 자신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오성일반을 규칙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판단력은

16) Vgl. K.d.r.V., B 14 - 185.

17) Ibid., B 117

18) Ibid., B 176.

그런 규칙아래로 포섭하는 능력”¹⁹⁾이라고 했으며, ‘이어서 판단력은 과연 “그 무엇 [한 사례] 이 주어진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잘 알려진 법칙의 사례인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능력”²⁰⁾이라고 말한 점이다. 따라서 인식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선험적 연역>은 오성과 관계하는 반면에 <도식론>은 판단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단력이 논의되는 위치가 바로 여기다.

칸트는 <도식론>의 체계에 와서야 비로소 오성을 이용하는 능력으로서의 「선험적 판단력」을 근거로 하여 직관이 범주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 같다. 말을 바꾸면, <도식론>의 체계에 있어서 바로 이 「선험적 판단력」이 구상력(재생적 구상력)에 의하여,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이 구상력의 소산물인 선험적 ‘도식-시간’(Schema - Zeit)²¹⁾의 규정에 의해서 ‘직관을 범주에 포섭’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²²⁾ 이러한 체계에서 볼 때 『순수이성비판』에 있어서의 <선험적 판단력>의 위치가 확인된다.

다른 한편 ‘도식-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판단력을 위한 구체적인 여러 원칙들을 칸트는 ‘판단력의 체계’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순수오성의 원칙의 체계>²³⁾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자세하게 논의했다. 이미 언급된 순수오성의 <도식론>의 체계가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 사용될 수 있는 감성적 조건을 다룬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순수오성의 원칙론>은 이러한 조건아래에서 오성의 순수한 개념으로 부터 선천적(a priori)으로 도출되는 종합적 판단을 취급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칸트에 의하면, 분석판단과는 달리 모든 종합판단이 객관적 실재성을 지

19) Ibid., 171.

20) Ibid., 172.

21) 박종홍, 「인식논리」, 박영사, 1972. S. 7. 필자가 <순수오성개념의 도식론> 안에서 확인한 바로는 칸트 자신은 “Schema-Zeit”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22) 이 점에 있어서 오성과 판단력의 기능상의 차이가 지적된다. 칸트가 범주표의 도출근거를 생각한 부분에서는 판단작용과 오성의 개념작용을 동일시켰으나, 여기 <도식론>에서는 구별된다.

23) 이러한 체계는 구체적으로 직관의공리, 지각의예료, 경험의유추, 경험적사고 일반의 요청등의 항목으로 구별된다.

니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험의 대상과 관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종합판단에 있어서의 주어와 술어개념의 종합을 가능케하는 어떤 제 3의 요소가 역시 경험을 성립시키는 조건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제 3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통각' 혹은 '선험적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험일반의 가능성의 제약은 동시에 경험의 대상의 가능성의 제약" ²⁴⁾이라고 하는 선천적 종합판단의 최고원리가 도출되는 최후의 근거는 「선험적 판단력」에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순수이성비판』, 특히 〈선험적 논리학〉에 있어서의 「선험적 판단력」은 '순수오성개념(범주)을 어떻게 대상에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해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Ⅲ. 「실천이성비판」에 있어서의 실천적 판단력 (die praktischen Urteils kraft)

법칙론적 윤리설을 주장하는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의 출발점은 도덕의 절대성과 의지의 자유를 자명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던 종래의 형이상학적 윤리설에 대하여, 이러한 도덕의 절대기준 및 의지자유에의 기본전제를 논리적으로 해명코자 하는데서 시작된 것 같다. 칸트의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경험에 나타난 도덕현상의 분석 내지 비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이미 자기의 인격안에 형성되어 있던 도덕원리의 절대타당성을 그의 독특한 '선험적' 방법으로 논증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순수실천법칙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순수이론의 원리를 의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따라서" ²⁵⁾ 논증가능함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칸트는 각각의 개별적 행위에 있어서 경험적 실질적 내용을 일체 배제한 先天的 立法의 形式만이 도덕법칙에 보편성과 필연성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을 모색했다. 왜냐하면 칸트에 있어서는 일

24) K.d.r.V., A111, B197.

25)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Philos. Biblio. Bd. 38
Felix Meiner, Hamburg 1974. S. 34 (이하에서는 K.d.p.V.로 표기함).

정한 상황에 있어서의 나에게 옳은 행위는 누구에게나 옳은 행위요, 나에게 그른 행위는 누구에게도 그른 행위라고 하는 것 즉 각개인의 욕구, 감정, 의견등과 같은 경험적 사정의 차이는 행위의 시비를 가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²⁶⁾고 하는 정언명법을 실천법칙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러한 칸트의 근본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개별적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은 자유의 법칙 즉 예지계 (die intelligible Welt)에 속하는 법칙이며, 개별적 행위는 경험의 세계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즉 감성계 (die sinnenwelt)에 속하는 사실인 것이므로 이들 양자사이에 어떤류의 동질성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두가지 상황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일치 또는 불일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순수이성이 어떻게 하여 실천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려고 고심했던 중심과제였다.²⁷⁾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칸트의 착상은 전혀 이질적인 두개의 세계, 즉 예지계와 감성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개념을 생각한 점에 있다. 그것이 곧 ‘도덕법의 전형’ (der Typus des Sittengesetz)²⁸⁾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마치 제 1비판²⁹⁾의 경우에 선천적인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 현상일반에 적용되기 위해서 선험적 도식의 기능을 요청한 것과 유사하다. 여하튼 칸트는 이 ‘전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개개의 현실적 행위가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실천적 판단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칸트는 “감성에 있어서 우

26) K.d.p.V., S. 35.

27) Vgl. ibid., S. 50 - 59f.

28) Ibid., S. 81.

29) 본 논문에서는 칸트의 주저인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각각 『제 1비판』 『제 2비판』 『제 3비판』이라는 표기와 혼용함.

리가 할 수 있는 행위 [눈에 보이는 행동] ³⁰⁾가 실천규칙에 종속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실천적 판단력이 결정할 일” ³¹⁾이라고 한데 이어서 “이 판단력이 규칙중에서 일반적 추상적으로 말해진 것을 행위에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³²⁾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천적 판단력」이 개개의 행위가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은 전형의 기능에 있다.

제 1비판에 있어서의 ‘도식’의 기능은 직관을 범수 아래에 포섭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도식을 통하여 감성적인 특수는 오성적인 보편의 특수한 경우로써 합리화되었다. 즉, 도식은 순수오성개념의 감성에 있어서의 대응물이었다. 그러나 실천이성에 있어서의 자유의 법칙은 초감성적인 것이어서 그 대응물을 감성계속에서 직관할 수 없는 것 ³³⁾이므로 그것은 자연법칙에서와 같은 자기자신의 직접적인 도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실천적 판단력」이 도식과는 다른 것으로서의 典型의 기능을 매개로 삼은 이유가 이점에 있어서 어느정도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천이성의 원칙에 있어서 그 특성이 지적된 것은 어떤 행위가 현상계에 드러나는 결과 여하가 아니라 단지 의지의 준칙 (die Maxime)이 보편적 입법으로서 타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의 법칙도 그것이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형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예지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도덕법칙의 전형’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은 현상계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고, 그러기에 「실천적 판단력」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자연의 법칙은 도덕의 원리에 따라서 행위의 준칙을 판정하는 전형” ³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도덕의 형식적 원리를 ‘자연의 법칙에 비추어’ 개별적 행위나 준칙에 적용하고자 할 때 그 일치의 여부를

30) 역자삽입은 [눈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한 것을 본 논문의 필자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표기했음.

31) K.d.p.V., S. 79.

32) Ibid.

33) Vgl. ibid., S. 80.

34) Ibid., S. 82.

판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자문의 형식을 취한다. 즉, “만약 네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너 자신을 일부로 삼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일어난다면, 너는 그 행위가 네 의지를 따라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라”³⁵⁾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원론』 제 2장에서 典型에 의해 채택한 네가지 실례를 본보기로 해서 개별적 행위에 대한 도덕성을 자세하게 검증한다.³⁶⁾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행위의 도덕성은 보편적 합법칙성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칸트의 견해에 따를 때,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여과된 순수한 행위의 형식만으로서의 개개의 현실적인 실제행위에 대해 합법칙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형식주의 법칙윤리 이론으로서의 칸트의 윤리설이 그저 단순한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내용을 갖춘 구체적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는 典型개념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판단력」에 있는 것 같다. 이 점에 있어서 판단력기능의 중요성이 지적된다.

IV. 「판단력비판」에 있어서의 반성적 판단력 (die reflektierende Urteilskraft)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칸트는 자연 필연성의 문제를 논의한 사변철학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 실천철학사이에 큰 틈이 있음을 간파하고, 이들 두 부문의 철학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시켜 볼 목적으로 『판단력비판』을 저술했다.

35) Ibid., S. 81.

36)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ants Schriften Bd. IV, Riga, 2. Aufl. 1786, S. 263-304; 네가지 실례는 거짓약속, 자살, 천부의 재능을 연마하지 않고 향락하는 일,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동경하지 않는 행위등이다.

칸트는 이 책의 〈제1서론〉³⁷⁾에서 인간의 사고능력의 체계를 三分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즉, 보편(규칙)을 인식하는 능력이 오성(Verstand)이요, 특수(특수)를 보편아래에 포섭하는 능력은 판단력(Urteilkraft)이요, 특수(특수)를 보편에 의해서 규정하는(특수를 원리들로부터 도출하는)능력을 이성(Vernunft)이라고 했다.³⁸⁾ 이러한 三分法³⁹⁾에 비추어 보면, 제1비판에서는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묻고, 오성이 그 법칙을 주는 것으로 하여 자연개념을 정초하였으며, 제2비판에서는 도덕적 선(최고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자유개념을 확립한 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 『판단력비판』에서는 자연개념에 의한 합법칙성에서 자유개념에 의한 궁극목적에로의 移行(Übergang)을 매개하는 「자연의 합목적성」(die Zweckmäßigkeit der Natur)⁴⁰⁾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었다. 물론, 제3비판에서 도입된 이 개념에 의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력」의 역할이 중시된다.

칸트는 『판단력비판』의 〈제2서론〉⁴¹⁾에서 「판단력」을 그 기능상으로 보아 두가지로 나누어 「규정적판단력」(die bestimmende Urteilkraft)과 「반성적판단력」(die reflektierende Urteilkraft)으로 구별했다. 즉, “판단력일반은 특수(특수)를 보편아래에 포함된 것으로 사유하는 능력”⁴²⁾이

37) Kant는 「판단력 비판」의 〈서론〉을 두번 썼는데, 본 논문은 처음의 것을 〈제1서론〉, 그리고 다음의 것은 〈제2서론〉으로 표기한다. 특히〈제1서론〉은 Gehard Lehmann에 의해서 철학문고판(Bd.39b. Leibzig 1927)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종류의 Kant 전집에서 “철학일반에 관하여”(Über die Philosophie überhaupt)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38) I. Kant, *Erste Einleitung in die Kritik der Urteilkraft nach der Handschrift*. Hrsg. von Gehard Lehmann. Philos. Biblio., Bd. 39b. 2. Aufl. Felix Meiner, Hamburg 1970, S. 7 (이하에서는 Erste. Einl. 으로 표기함).

39) J. N. Tetens가 인간의 정신활동에 대한 종래의 Aristotle-Wolff적인 二分法(지각, 의욕)에다가 그의 선배인 J. G. Sulzer의 영향을 받아 감정이라고 하는 또하나의 정신활동을 추가하여 三分法(知, 情, 意)을 사용하였는데, 칸트가 바로 이 분류법을 받아들여 인간의 사고능력을 三分(오성, 판단력, 이성)한 것임.

40) I. Kant, *Kritik der Urteilkraft*, Philos. Biblio., Bd. 39a, Felix Meiner, Hamburg 1974 S.28 (이하에서는 K.d.U.로 표기함)

41) 편이상 필자가 이렇게 표기했으나 현재의 〈서론〉을 말함.

42) K.d.U., XXVI.

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보편(법칙, 원리, 규칙)이 주어지고 그 밑에 특수성을 포섭하는 경우 그것은 규정적(bestimmend)이고, 이와는 달리 특수만이 주어지고 이에 대하여 보편은 찾아야 할 경우의 그것은 반성적(reflektierend)이다”⁴³⁾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오성이 부여하는 보편적인 선형적 법칙들 아래에 있는 「규정적 판단력」은 포섭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자연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보편에 예측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자신의 법칙을 고안해 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⁴⁴⁾

이상과 같은 칸트 자신의 분류에서 보면, 제 1비판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력은 오성개념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경험의 세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오성개념을 대상세계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규정적 판단력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제 2비판의 경우 역시 개개의 행위가 과연 보편적인 법칙(혹은 규칙)에 적합해 있느냐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단력이므로 이것 또한 규정적 판단력임이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인식론적 판단력이나 실천적 판단력이 다 같이 「규정적 판단력」인 이유는 보편적인 것(인식론적 원칙이건 실천적 법칙이건)을 특수한 경험적 관념(구상력의 산물인 도식이거나 혹은 순수한 실천적 판단력의 기초개념으로서의 전형이거나)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인 점에 있다.

그러나, 『판단력비판』에 있어서의 판단력은 특수적인 것만이 주어지는 데서 그 특수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⁴⁵⁾ 어떤 보편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反省하는 능력 즉 「반성적 판단력」으로써 규정적 판단력과 구별되는 기능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수한 걸음걸이를 보고 특정한 누구인가를 判定하는 능력과 유사한 것으로서 개념에 의한 확실한 인식기능이 아님은 물론이고, 더군다나 판단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技巧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이유에서 칸트 자신도 이 「반성적 판단력」을 일명 「기교적 판단력」(die technischen Urteilskraft)⁴⁶⁾라고 부른 것 같다.

43) Ibid.

44) Vgl. ibid.

45) Vgl. ibid.

46) Erst. Einl. S. 45ff.

그러면, 칸트가 제 1, 제 2 비판에서와는 달리 제 3 비판에서 「반성적 판단력」을 요청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칸트가 제 1 비판의 A 판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사고기능에 대하여 단연 부정적이었고,⁴⁷⁾ B 판에 와서는 해당부분의 각주에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⁴⁸⁾ 비로소 제 3 비판에 와서야 「반성적 판단력」의 기능에 대하여 긍정적인 확신을 보였다. 물론,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칸트 자신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겠다. 즉, “자연의 형식들은 극히 다양한 것이므로…… 순수오성이 선천적으로 부여하는 제법칙들(규정적 판단력이 부여하는 법칙을 말함)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있다. 이 다양성이 성립하기 위하여 거기에 또 다른 법칙이 없을 수 없다.”⁴⁹⁾ 고 한 설명 부분이다.

여기에서, 칸트의 설명을 따르고 있는 우리로서는 특수로 부터 보편으로 소급하는 임무를 띤 이 「반성적 판단력」이 보편적 자연법칙에 의해서 아직도 ‘규정되지 않고 남겨진’ 특수한 경험적 자연의 제법칙을 ‘통일된 체계’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또 다른 하나의 원리를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원리는 경험으로 부터 도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논리적인 제법칙에 의해서 도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만일 그 원리가 경험이나 법칙에 의해서 도출된다면 이 때의 판단력은 이미 반성적이 아닌 「규정적 판단력」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칸트는 「반성적 판

47) Vgl. K.d.r.V., A21. A801; Kant는 「Die Grenzen der Sinnlichkeit und der Vernunft」(1771년 6월 7일자 Marcus Hertz에게 보낸 편지에서 Kant 자신이 밝힌, 그 당시 계획중이었던 책명)라는 하나의 저작속에다가 후에 나온 세 비판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룰 계획이었으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차츰 수정되었다. 이 사실은 아마 본 논문의 각주 3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J. N. Tetens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그리고 칸트가 K.d.U.의 초고격이 될뻔했던 「Grundlage der Kritik des Geschmacks」(1787년 6월 25일자 Schütz에게 보낸 편지)를 구상한 것이 K.d.r.V.의 B판이 나온 이후인 것으로 미루어 최소한 A판을 쓸때는 反省的 判斷力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48) Ibid., B 35. B 829.

49) K.d.U., XXVI.

단력」이 “자기자신에 대해서만 하나의 법칙을 부여할”⁵⁰⁾ 수 있는 어떤 선험적 원리 (die transzendente Prinzip)를 정초할 목적에서 「자연의 합목적성」(die Zweckmäßigkeit der Natur)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했던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칸트가 말하는 합목적성개념이란 어떤 것인가?

물론, 이 개념은 제3비판서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그것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선결문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우선 「반성적 판단력」의 개념파악을 위한 당면한 과제와의 연관에서 보면, 『판단력비판』의 〈제2서론〉부분에서 「목적」(Zweck)과 「합목적성」(Zweckmäßigkeit)의 개념을 구별하여 밝히고 있는 칸트자신의 표현을 통하여 어느정도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구별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하나의 객체에 관한 개념은 그 개념이 동시에 이 객체의 현실성의 근거를 함유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목적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하나의 사물이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물들의 성질과 합치하면 그것은 사물들의 형식의 합목적성이라고 한다.”⁵¹⁾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造形物이 우리의 의지나 목적에 따라 형성된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칸트의 경우에 있어서서는 이 개념이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개개의 사물이 전체적인 통일체와 조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전체적 통일이 조화의 근거이고 원천임을 연상케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다.

칸트에 있어서 자연의 「합목적성」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는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 인식의 목적에 대해서 적합해 있다는 의미에서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⁵²⁾ 이요, 그리고 「반성적 판단력」 가운데서만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선험적 (a priori)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그래서 칸트는 이 합목적성개념은 “자연개념도 자유개념도 아니며 단지 우리가 자연의 여러 대상을 철저하게 결

50) Ibid., XXVII.

51) Ibid., XXVIII.

52) Ibid.

53) Ibid.

합적인 경험을 목적으로 하여 의도하는 반성을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방식을 표시”⁵⁴⁾ 하는 개념으로서 “판단력의 주관적 원리(격률)”⁵⁵⁾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합목적성의 개념은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원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반성활동에 관한 원리에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써 자연과 목적과를 조화 결합하여 자연에도 목적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제3의 세계의 원리를 해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칸트의 부분적인 몇가지 설명을 통하여 볼 때, 합목적성 개념은 주관성, 선천성, 형식성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비판철학의 전체계속에 깔려 있는 이러한 선형철학의 특징은 「합목적성」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제3비판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특징을 지닌 「합목적성」개념의 정초가 불가피했던 이유는, 기계적인 인과필연성의 원리만으로써는 그 해명이 ‘불충분한 영역,’⁵⁶⁾ 즉 미적영역과 유기적 자연의 영역이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 칸트가 이들 두세계를 해명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두 영역은 과연 「합목적성」개념에 의하여 “마치 어떤 하나의 오성(인간의 오성이 아닌)이 다양한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을 통일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 처럼”⁵⁷⁾ 표상됨으로써 전적으로 해명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판단력의 개념을 문제 삼고 있는 본 논문에서 있어서는 일단 제외시키기로 한다. 단지 여기에서 필자가 확인코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판단력비판』에 있어서는 「합목적성」개념을 중심으로 한 「반성적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가 실로 그 체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비판철학에 있어서의 「반성적 판단력」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칸트의 비판철학 체계에 있어서 판단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성 및 이성과 함께 상위의 고급한 인식능력에

54) Ibid., XXXV.

55) Ibid.

56) Vgl. XXVI.

57) Ibid.

속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칸트철학 전체를 마무리하는 要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단력은 특히 자기자신의 본래적인 기능으로서의 매개역할을 함에 있어서 일단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⁵⁸⁾ 즉, 제 1비판과 제 2비판에 있어서의 「규정적 판단력」과 제 3비판에 있어서의 「반성적 판단력」이 그것이다. 그런데 「규정적 판단력」이나 「반성적 판단력」이 일단 매개기능을 지닌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매개기능은 전자의 기능보다 더 포괄적인 점에 그 차이가 있다.

우리가 제 1비판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은 어떤 객관적 대상이 주관의 a priori 한 형식에 의해서 개념화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기능으로서의 판단력은 오성의 법칙아래에서 단지 圖式的으로만 작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판단력은 칸트자신에 의하여 선형적 판단력일반(die transendentale Urteilskraft überhaupt)이라고 명명한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 제 2비판에 있어서 칸트가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으로 삼은 無上命命이 우리의 개별적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도덕법칙의 典型을 매개로 하여 등장하는 판단력은 바로 실천적 판단력(die praktischen Urteilskraft)을 의미한다. 위에서 말한 두 종류의 판단력 즉 선형적 판단력과 실천적 판단력의 공통점은 일단, 어떤 규정아래에다가 특수한 사실을 포섭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 3비판에 있어서의 판단력의 기능은 특수한 사실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아직 '주어지지 않은' 어떤 보편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반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때의 판단력은 인식의 능력이기는 하되 확실한 인식을 요구하는 고급한 능력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특수를 통해서 보편을 관정하는(beurteilen) 능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칸트는 제 1비판 및 제 2비판에서의 판단력을 이러한 그들이 지닌 기능상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규정적 판단력(die bestimmende Urteilskraft)이라고 명명하여 이들 각각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별했다. 그러므로 칸트에 의하면 반성적 판단력도 하나의 a priori 한 원리에 의거하는 능력이기는 하지만

58) 본문 각주 42) 43) 참조.

그러나 이때의 a priori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a priori하게 규정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수한 종류의 판단력인 반성적 판단력은 어디까지나 a priori한 오성개념에 의한 이성의 '구성적'(regulativ) 사용이 허락되는 그러한 인식능력이 아니라 이성의 '통제적'(konstitutiv) 사용에만 국한된 독특한 인식능력이기 때문이다.⁵⁹⁾

결국, 반성적 판단력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능력이기 보다는 오히려 특수를 통해서 보편을 판정함으로써 경험의 연관과 통일을 꾀하려고 하는 인식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칸트의 세 비판서에 나타나고 있는 판단력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 봄으로써 비판철학체계에 있어서의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가 지닌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다시 한번 세 비판서를 중심으로한 판단력의 개념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비판에 있어서의 판단력은 「선형적 판단력」으로서 圖式을 매개로 하여 전혀 이질적인 순수오성개념과 경험적 직관을 결합하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제2비판에 있어서의 판단력은 「실천적 판단력」으로서 典型을 매개로 하여 실천법칙(무상명령)이 개별적 행위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능력이었다. 다음으로 제3비판에 있어서의 판단력은 「반성적 판단력」으로서 合目的性을 중심으로 하여 순수오성이 선천적으로 부여한 여타의 법칙들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判定하는 능력이었다.

우리가 「판단력」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본 결과 칸트의 비판철학이 단순한 정적체계가 아니라 세 비판서에 있어서의 圖式性, 典型, 合目的性 등의 개념이 중심이 되어 유기적 연관을 지닌 동적체계인 것 처럼 느껴진다. 특히, 合目的性 개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이 서로 단절된 것

59) K.d.U., S. 314.

칸트에 있어서 判斷力의 概念

같은 제 1 비판과 제 2 비판의 체계들을 결합시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판 철학의 전체계에 있어서 '도식기능'을 떠 맡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없지 않다. 과연, 이러한 「느낌」들이 「논증」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판단력비판』을 중심으로 하여 칸트자신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계속 추론해 보는 일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